

06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김/오수고 전문위원_국제원산지정보원

1.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 한지 10년이 되었다. 그 간 9개 권역 47개 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전체 교역량의 36% 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도 증대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FTA 무역환경에서 무엇보다도 품목분류 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수출입물품이 FTA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 어야 하는데, 그 충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수출입물품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산에 사용된 상품의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품외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품목분류란 수출입물품의 세율을 정할 목적 등 으로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그 물품이 해당하는 품목번호 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9. 품목분류의 주체는 관세관청인 세관과 관세사나 수출입업체 등이나, 최종관청인 세관은 관세관청에서 기재되는 모든 물품이 된다.

전기다리의 품목번호는 제8516호이고 기본세율은 8%입니다.



그렇지만 한-EU FTA 원산지상품이면, 특혜세율이 0%가 됩니다.

2. FTA 무역환경에서 품목분류 트렌드의 변화

가. 수출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¹⁰⁾의 품목번호 확인도 필요

FTA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첫째가 협정 에서 특혜를 주도록 정한 품목이어야 하고, 둘째는 계약당사국의 일방이나 양당사국에서 만든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 그런데 계약당사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만든 상품을 추가 가공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만든 상품의 일부를 혼합하거나 결합 하여 만든 상품인 경우에는 품목번호의 변화정도 (세번변경기준)나 부가치의 증가 정도로 원산지 상품인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상품뿐만 아니라 그 물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번호 확인도 필요하다. 즉, 아래 <그림1>과 같이 한-EU FTA에서 전기다리미(제8516호)가 원산지상품이 되려면 "모든 호그 재료의 호는 제외 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나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공정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한다.

이 때 "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라는 것은 제8516 호에 속한 상품은 계약당사국(우리나라와 EU)의 원산지상품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10) 이 글에서 '재료란' 생산자의 관점에서 최종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최종 상품의 일부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성성분(ingredient, 원재료(raw material), 구성요소(component), 부품(part)) 모두를 포함한다. 다음 그림에서 저울은 조울기나 전자저울 등은 구성요소나 부품으로 제표가 된다. 그런데 전자저울의 생산자는 전자저울이 최종 상품이 되고, 귀리(선)나 마뽕, 제빵인 밀라스트의 등이 제표가 된다.

/ (그림 1) 전기다리미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품목번호 /

1. 자동온도조절기 (제9032호)비원산지상품		5. 전력케이블 (제8544호)비원산지상품
2. 스티븐사기 (제8424호)비원산지상품		6. 워터탱크 (제8516호)원산지상품
3. 프레임과 손잡이 (제8516호)원산지상품		7. 표시반 (제8531호)비원산지상품
4. 열판 (제8516호)원산지상품		8. 전열용 저항체 (제8516호)원산지상품

* FTA 활용성 원산지상품이란 우리나라나 체약국에서 만든 상품. 비원산지상품이란 그 외 국가(지역)에서 만든 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기 실제 품목분류를 함께 있어 최종 상품(예: 전기 다리미)의 품목번호뿐만 아니라 전기다리미의 다리미)을 분류하는 것보다 재료의 품목분류가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어려운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 이유는 품목분류 원산지상품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서 의 대상이 많은 뿐만 아니라 거래유형도 다양하고 제8516호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품명이나 기능이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여야 한다.

전기다리미가 어떤 경우에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는지요?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공정도 가격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홀(그 재료의 홀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나,



나. 국내거래상품의 품목분류도 필요

전기다리미가 원산지상품인지를 확인하려면 전기 다리미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거나 체약국(미국)이 경우에는 EU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국내공급자나 수출자(국가)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원산지상품인지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해당 상품(예: 전열용 저항체)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예: 니크롬선의 품목분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국내거래만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은 FTA 특혜세율의 이인을 직접 누리는 것이 아니라 FTA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설명 중소기업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해도 품목 분류 등 원산지관리자의 전문인력이나 기존 인트라

를 갖추고 있지 않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위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다. 수출상품의 품목분류도 중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품목분류의 주된 목적이 수입상품의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출상품은 수입상품에 비하여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FTA 무역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관세청에 수입상품의 품목분류를 주로 의뢰하였다면, EU와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국가)과 FTA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수출상품의 품목분류 질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FTA가 확대되면 탈수록 심해지리라 예상된다.

제8516호에 속하는 3,4,6,8 모두 원산지상품 이므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네요.



그렇지만 역외산인 1,2,5,7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8516 호에 해당하면 원산지 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1. 자동온도조절기
- 2. 스티븐사기
- 5. 전력케이블
- 7. 표시반

/ (표 1) 관세법 제86조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연도별 신청건수 /

구분	(단위: 건수,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상품	1,330(81)	1,302(49)	2,755(51)	2,885(42)
수출상품	316(19)	1,330(51)	2,652(49)	4,002(58)
합계	1,646(100)	2,632(100)	5,407(100)	6,887(100)
증감비율	28	60	105	27

* 관세청 통계연감에서 발제한 것으로 한-EU(2011.7)와 한-미(2012.3) FTA가 발효된 시점을 전후로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2013년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약 4.2배 증가했는데, 수입은 약 2.2배가 수출은 12.7배가 증가하였다.

FTA 무역환경에서 수출상품의 신청건수가 급증 존중해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토록 조치하여 하는 이유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리는 것과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다. 즉, FTA 더 나아가서는 품목번호에 따라 특혜세율이나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우리나라와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수입국간의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대응할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라 여겨진다. 동일 상품에 대하여 수출국기와 수입국기의 품목 번호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하더라도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출신고서 기본적으로 FTA의 특혜세율 적용이나 원산지 증명인지 여부의 판정을 위한 품목분류는 수입 국가의 관련이므로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품목 분류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입국의 품목분류를

3. 품목분류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

현실적으로 품목분류 다툼의 본질은 품목번호가 달라짐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세율 차이 등 수출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다툼이 발생하는 상품을 국한

할 수는 없지만, FTA 특혜세율 적용과 원산지상품 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상품에서 자주 발생한다.

가. 부분품(part, 부품)

사전(辭典)에서 부분품이란 “하나의 기계나 장치, 제품 등의 전체 속에서 이를 이루는 개별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HS 품목분류표에서는 “부분품”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용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품목분류의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 그러는지 앞의 (그림1)에서 언급한 전기다리미에 사용하는 자동온도조절기와 워터탱크(water tank)를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HS 품목분류표에서 해당 품명(상품명)을 특별히 규정하는 호가 있으면 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자동온도조절기는 제9032호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워터탱크는 특별히 규정하는 호가 없기 때문에 구성 재료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제3926호)’에 분류할지 아니면 ‘전기 다리미의 부분품(제8516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경우에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전기다리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데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비원산지상품인 자동온도조절기(제9032호)와 원산지상품인 워터탱크(제8516호)가 서로 결합 (모듈화)되어 하나의 상품을 이룬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나 워터탱크 중에서 어느 하나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품으로 보아 그 상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전기다리미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다양한 결합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수출입업자는 FTA 특혜세율 적용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제8516호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제8516호로 분류되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원산지상품이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여러 개의 구성요소를 하나로 집약한 모듈화된 상품이 많이 개발·거래됨에 따라 이러한 다툼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나. 블랭크(blank, 반가공품)

아래 (그림2)와 같이 블랭크란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나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전한 제품이나 완성된 제품을 만들 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 적합한 블랭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완전한 제품과 같은 호에 함께 분류한다.

각 FTA 협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품목 번호의 변화(세번변경기준)나 부가가치가 일정한 비율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비원산지 재료인 블랭크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완전한 상품을 만들었다더라도 품목번호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 부가가치 비율을 적 용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블랭크를 분류할 때에도 다 틀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다. 융합상품

‘융합’이란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 시켜 하나로 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산업발전이 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다양한 융합상품이 개발·거래되고 있다. HS 품목분류표

비테를 미국에서는 제8524호에, EU에서는 제8516호로 달리 분류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제8424호로 분류합니다.

4. 문제점 해결방법

가. 수출입업체의 사전준비절차와 관리능력 배양

‘자기의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라는 격언과 ‘범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제조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를 기초로 자기가 생산·거래하는 상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다.

즉, 자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나 상품의 기능·용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HS 품목분류표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데, 이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사후에 다통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사후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면 관세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사전환시 또는 FTA특례법 제4조에 따른 원산지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청장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거나 합정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사전에 예측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간의 품목분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수입지와 긴밀히 협조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유익한 방법 중 하나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자사 상품의 FTA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함께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원산지관리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 꼭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HS 위원회에 신청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HS 위원회에는 수출입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수출기업과 국내공급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FTA 활용률 증대

FTA는 협정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그 절차도 복잡하므로 수출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FTA 맞춤형 컨설팅과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의 FTA-PASS 등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보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리고 국내거래를 주로 하는 협력사를 위하여 사전에 원산지상품인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를 전국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는 수입국의 부담하거나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하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내거래업체가 정확한 원산지확인서를 작기에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능력과 인식의 변화로 국내거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더 많은 성과를 내려면 충분한 홍보와 함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실화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 품목분류 전문가의 양성

FTA는 품목분류에서 시작해서 품목분류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다양한 모든 상품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상품이 합당한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품목분류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¹²⁾으로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국제적인 품목분류 식견을 가진 민관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런 전문가는 단기간에 양성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라. 품목분류 사전심사상품의 위탁처리

수출업체는 자기의 능력으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거나,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이나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사유 등으로 관세청장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종전에는 주로 수입상품에 관한 질의가 주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수출상품의 질의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수입국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수출상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질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수출자가 직접 질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상대국 관세당국에 제출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더 나아가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¹²⁾

따라서 이 품목분류사전회시사는 신청자의 편의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욱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제한된 인원으로 폭주하는 업무량(2013년에는 2010년 대비

5. 맺음말

FTA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역통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무역환경에서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우리 수출상품이 최대한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수출상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약 4.2배 증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류상품의 복잡성과 국제사례의 조사 등으로 정확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FTA가 확대될수록 심화되고, 우리나라 전체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극에 달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조직이나 인력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리 민간 전문가를 지정하여 상품의 제조공정이나 각국의 품목분류사례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일부 위탁 처리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FTA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작기에 정확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상품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글에서는 품목분류에 관한 제한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더라도 FTA에서 품목분류가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문제해결방법으로 제시한 사항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과 국내공급업체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국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¹²⁾ 관세제도운영이 선진화되지 않은 아세안 국가 등의 관세당국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행정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우리도 우리나라와 수입국간의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될 때에 수입국의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사명을 제출하면 수입국의 품목분류를 기재해서 FTA 특혜심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